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채·회사채의 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포함〉

■ 이성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33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2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	---

2. 검토의견	5
---------------	---

【참고】 개정안 조문대비표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9.
3. 회부연월일 : 2025. 6.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직무윤리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심사 등의 대상 범위에 주식 외에 외국채·회사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u>주식</u>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주식등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 ----- ----- ----- ----- ----- <u>주식·외국채·회사채</u>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
제1조(목적)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등)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 주식 → 주식등 ◦ 주식백지신탁 → 주식등백지신탁 ◦ 주식백지신탁계약 → 주식등백지신탁계약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20조(기획·총괄기관)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징계 등)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30조(과태료)	
법률 제13695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671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 주식백지신탁 → 주식등백지신탁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등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등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등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식등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내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공개대상자등(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¹⁾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

《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요 》

-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 사무 국 소속 4급 이상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하 ‘공개대상자등’)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 **(의 무)**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다만,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시 보유 가능

자료: 인사혁신처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²⁾부터 2개월

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을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되며, 동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음.

한편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 그 대상이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에 외국채·회사채 등 증권을 포함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 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는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 외국채·회사채와 주식을 비교해 볼 때 채권을 소유한 채권자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달리 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경영 참여권이 없고 채권의 수익구조 또한 변동성이 크지 않아 공직자의 영향력 행사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주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논의 시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주식과 채권의 성격 비교》

구분	주식	채권
정의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	기업·정부 등에 돈을 빌려준 증서
투자자	지분 소유자	채권자
의결권	있음	없음
수익 형태	배당금 +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	이자 수익 + 원금 상환
위험도	비교적 높음	비교적 낮음
손실 가능성	최대 전액 손실 가능	일정 수준 보호(부도 시 손실 가능)
만기	없음	있음(보통 1~30년)
예시	○○전자 주식, △△반도체 주식	국채, 회사채 등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고정된 수익구조로 가격 변동 요인이 없어 공직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에 대해 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공직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회사채·외국채는 주식에 비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쳐 사익을 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자 수취 외에는 의결권·경영 개입권이 없고 발행 주체와의 관계도 간접적이므로 이해충돌 우려가 낮으므로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시 공무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참고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u>주식백지신탁</u>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주식등백지신탁</u> ----- ----- ----- ----- ----- ----- -----.
제6조의2(<u>주식</u>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u>주식</u>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u>주식등</u>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 ----- ----- ----- ----- <u>주식·외국채·회사채</u> (이하 “ <u>주식등</u> ”이라 한다)-----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

탁) ①

주식등

주식등

주식등 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

1. -----주식등-----
2. -----
- 주식
- 등백지신탁-----
-
- 가. -----
-
- 주식등-----
- , -----주식
- 등-----
-
-
- 주식등-----
-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
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 바. (생 략)

② (생 략)

③ 공개대상자들은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
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
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
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
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다.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
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
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
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
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

나. ~ 바.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식등백지신탁
계약-----

-----.

④ -----주식등백지신탁
계약-----

-----.

⑤ -----주식등-----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주식등백지신탁 심사위원
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주식등-----

-----주식등백지신탁-----
-----.

② 주식등백지신탁-----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
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

③ 주식등백지신탁

⑥

주식등이

주식등의 매각 의

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

주식등의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

⑨ 주식등백지신탁-----주
식등-----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
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
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
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
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
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
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
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
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
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
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 3. (생 략)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
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

-----.

⑩ 주식등백지신탁-----주
식등-----

-----.

⑪ 주식등백지신탁-----

-----.

1. ~ 3. (현행과 같음)

⑫ -----주식등백지신탁-----

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

-----.

⑬ -----
-----.
-----주식등
백지신탁-----

-----.

⑭ 주식등백지신탁-----

-----.

제14조의6(주식등 취득의 제한) ① -----주식등백지신탁계약-----

-----주식등-----
-----.

② -----
-----주식등
취득-----

-----주식등-----

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

-----주식등-----

-----주식등-----

-----주식등
-----백지신탁-----

③ -----주식등백지신탁-----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

-----주식등백지신탁계약-----

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

--. -----

-----.

② -----
-----주식등백지신탁계약-----

-----.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계약-----

-----주식등백지신탁계약-----

고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2. (생략)

③ (생략)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 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

② 주식등백지신탁-----

-----.

1. -----주식등-----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0(주식등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등백지신탁

-----.

②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계약-----

-----.

-----주식등백지신탁계약-----

-----.

1. ~ 3. (현행과 같음)

4.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5.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에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

주식등백지신탁-----

5. -----주식등백지신탁-----

③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계약-----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

-----.

주식등백지신탁계약-----

-----.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

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3.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주식등-----

---주식등-----주식
등-----

-----.

1. -----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계약-----

-----주식등-----

2. -----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백지-----

신탁-----

3. -----

주식등백지신탁-----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
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
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
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날까지

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
식의 매각: 매각한 날

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
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
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

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
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
보받은 날

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
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
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
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4. -----
-----주식등-----

가. -----
-----주
식등-----

나. -----
-----주
식등백지신탁-----
-----주식등-----

다. -----

-----주식등
백지신탁-----

라. -----

-----주식등백지신탁-----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 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

② (현행과 같음)

③ -----

-----주식등-----
-----주식등-----
-----.

④ -----
-----주식등-----
-----주식등-----

주식등-----

-----.

제14조의12(주식등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
-----주식등백지신탁-----

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
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3. (생략)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 제14
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
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
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
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
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
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
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제6항
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
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
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
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식등백
지신탁-----

-----.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3(주식등과 직무관련성 없
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 -
-----주식등의
매각 의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

-----주식등과-----

-----.

② -----

-----주식등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

③ (생 략)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
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
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
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
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
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
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
야 한다.

②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
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
한)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
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
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
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

③ (현행과 같음)

④ -----

-----주식등-----

-----.

제14조의14(주식등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

-----주식등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

② -----
-----주식등-----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등 취득의
제한) ① -----

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0조(기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
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
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
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
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
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

주식등

② _____

_____ 주식 등 _____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기획·총괄기관) -----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주식등

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의3(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생략)

1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16.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주식등백지신탁-----

-----.

제22조(징계 등)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주식등-----

13. (현행과 같음)

14. -----주식등-----

15.·16. (현행과 같음)

17.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u>주식백지신탁계약</u> 을 해지한 경 우	17. ----- <u>주식등백지신탁계약</u> ----- ---
18. 백지신탁한 <u>주식</u> 또는 보유하 고 있는 <u>주식</u> 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u>주식</u> 과 관련한 직무에 관 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 <u>주식등</u> ----- ----- <u>주식등</u> ----- ----- ----- ----- <u>주식등</u> ----- ----- ----- ---
19. ~ 21. (생략)	19. ~ 21.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u>주식백지신탁</u>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 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 유하는 <u>주식</u> 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2(<u>주식등백지신탁</u> 거부의 죄) ----- ----- ----- ----- <u>주식등</u> ----- ----- ----- -----.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 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 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하 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u>주식백지신탁</u>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 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 ----- ----- ----- ----- ----- ----- ----- <u>주식등백지신탁</u> ----- ----- -----

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②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llegible]

제28조의2(주식등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주식등

주식등

주식등

4.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u>주식</u> 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 <u>주식등</u> ----- -----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u>주식백지신탁계약</u> 을 해지한 사람	5. ----- <u>주식등백지신탁계약</u> ----- -----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3695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3695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u>주식백지신탁</u>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u>주식백지신탁</u> 심사위원회의가 이 법 시행 후에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u>주식등백지신탁</u>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 ----- ----- <u>주식등백지신탁</u> ----- ----- ----- -----.
제3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u>주식백지신탁</u>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금지에 관한 적용례) ----- ----- <u>주식등백지신탁</u> 에----- ----- ----- ----- --.

제4조(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u>주식백지신탁</u> 의무가 발생하는 공개대상자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 ----- ----- <u>주식등백지신탁</u> ----- -----.
법률 제16671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6671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거나 <u>주식백지신탁</u>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 ----- ----- ----- <u>주식등백지신탁</u> ----- -----.
법률 제177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7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u>주식백지신탁</u>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 ----- ----- <u>주식등백지신탁</u> ----- -----.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u>주식</u>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 ----- ----- <u>주식등</u>

<u>백지신탁</u>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 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매각 또는 <u>주식백지신탁</u>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각·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직 위변경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 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의6제 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u>백지신탁</u>----- -----.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 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 -----<u>주식등백지신탁</u> ----- ----- ----- ----- ----- ----- ----- ----- -----.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식등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주식등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등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주식등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내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의1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
는 분기부터 적용한다.